

경찰조사의 증거능력에 관한 쟁점 및 검토*

A study on the Police Reports on the Issues
and Complementary Skills of the Evidence Reviewed

이 만 종(Lee, Man Jong)**

ABSTRACT

2008 revised Criminal Procedure Code, written by a police officer suspects Sosa made pursuant to the standing of legal procedure and investigation implied confessed to the crime in court. Once the written evidence of her ability to do it is recognized,

Revised Criminal Procedure Code, the investigator testified that the new system introduced in the investigation phase of the defendant's testimony and evidence, police investigation, and complementary skills, but restrictions still remain.

However, written evidence of the ability to suspect the paper is essentially a problem of human rights guarantees a suspect in a position to limit the paperwork, so far as the center rather than a trial, law enforcement agencies in maintaining the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the trial, the center is to strengthen in terms of The written evidence of the ability to strictly limit the times you can request .

Therefore, the officers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of a suspected case in the paper written by the wife of the defendant being proven guilty reinforce the negative charge and thorough investigation is required.

In this paper, written by a police officer suspects in connection with papers written evidence of the skills being discussed in recent issues and appropriate sex and whether Jaya complementary measures that will want to review about,

Key Words : 경찰조사(polic investigation), 공판중심주의(the trial centered care), 증거능력(proof of ability), 전문법칙(professional law)

* 본 논문은 2010년도 호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I. 서 론

모든 범죄수사의 97%이상이 경찰의 손을 거쳐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경찰관에게도 독자수사권을 인정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이 다시 검찰에서 재조사 받는 번거로움과 소송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의 계속된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과 판례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록 증거능력 인정에 있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보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하더라도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피의자 인권에 대한 우려는 검찰 역시 근본적으로는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2008년 개정 후 시행되고 있는 현행형사소송법 역시 공판 중심주의란 명분을 내세우면서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문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행형사소송법의 공청회와 쟁점에 관한 논의 시부터 법원 측이 공판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을 더욱 부인하려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나아가서는 공판중심주의란 것은 재판 투명화를 위한 공판심리중심화원리로서 수사절차상 증거능력 배제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법원 측이 굳이 공판중심주의를 이용하여 증거법의 일반이론에 맞지도 않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이완규,2007:747).

물론 위 논쟁사항들은 현행형사소송법이 법안의 개정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되어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원 진술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영상녹화 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인정 할 수 있게 보완되었고 (제321조 2항),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역시 종래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경찰관이 공판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증언하면 조서의 내용을 증거로 할 수 있게 하는 '조사자 증언제도'(제 316조 전문 진술)를 새롭게 도입하여 사법경찰관의 증언의 증거능력을 한층 더 보완하게 되었다. 1)

그러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비록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수사과정에 있어서 영상녹화가 활성화되는 등 수사방식이 종래에 비해 인권 친화적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파생된 수사권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피의자신문

1) 개정 전 형사 소송법은 피고인의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해도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은 진정되지 않았다.

조서의 경우에도 작성 주체에 따라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실무 현장에서의 일부 제도의 운영이 현행증거법과의 개념과 맞지 않는 등 몇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조서 위주의 수사와 재판관행이 이루어졌던 점을 해소하고 이제는 공판중심주의로 인한 공판절차에서의 수사경찰관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경찰의 수사 능력이 제고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중 사법경찰관 작성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최근 논의 되고 있는 주요 문제점과 적절성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수사의 근본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상호 양립되는 두 가지의 측면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확립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현행법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 증거능력 요건

1)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근거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사실 관계의 규명과 피의자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 244조에는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해 피의자 진술을 신문조서에 기재”하게 하고 있다.

이는 모든 수사행위의 최종목표는 범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내리게 하는 법관의 판단자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수사를 잘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에 확인시키지 못하고, 특히 수집된 수사 자료를 무용화시키는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는 조사한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수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만종,2007:298).

2)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

(1)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주체에 의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로 구분된다. 그러나 증거능력 요건에 있어서는 작성주체에 따라 다소

의 차이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312조 1항에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바, 주된 요건으로 첫째는 '성립의 진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원 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는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는 것이다. 성립의 진정에는 형식적 성립의 진정과 내용적 성립의 진정이 있는데 전자는 서명날인이 진정함을 뜻하는 것이고 후자는 조서의 기재 내용과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함을 뜻한다 할 수 있다.

둘째 진술의 '특신 상태'로서 이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의미이다.²⁾

셋째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경우에도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때와 피의자신문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자백을 기록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2) 검사이외 수사기관(경찰포함)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형사소송법 제 312조 3항에는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타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용을 인정 할 때'를 줄여서 '내용인정'이라 할 수 있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³⁾

2.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판례의 해석

대법원은 종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 날인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2)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신용성의 정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 3997판결.

있다」⁴⁾거나,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조서에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 244조 제 2항, 제 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⁵⁾라고 하여 형식적 진정이 있으면 실질적 진정을 추정(推定)하고 있으며,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⁶⁾보면서,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일게 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일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 제 312조 본문의 의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이른바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는 요즘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 즉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피의자신문조서)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참고인진술조서),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검증조서)는 그것이 위와 같은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아래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있으며, 위단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1)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 검증조서에 비하여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을 강화하고(성립의 진정이외에도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함), 2) 그것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점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하여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는, 그것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면, 성립의 진정함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⁷⁾라고 판시하여 명시적으로 성립의 진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대법원판례와는 달리 추정을 부정하

4) 대판 1983.6.14, 83도647; 대판 1984.9.11, 84도1379; 대판 1986.9.9, 86도1177; 대판 1987.9.8 87도1507.

5) 대판 1994.1.25, 93도1747; 대판 1995.5.12, 95도 484; 대판 2000.7.28, 2000도 2617.

6) 대판 1992.2.28, 91도2337; 대판 1995.11.10, 95도2088; 대판 1996.6.14, 96도 865.

7) 헌재결 1995.6.29, 93헌바 45.

고 있는 듯하다.

3.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현행형사소송법에서는 영상녹화 물을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의 한 방법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 312조에 조서의 진정 성립에 대한 증명수단, 기억 환기용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면서 영상녹화 물을 독립된 증거, 즉 본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물은 실질적으로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전문법칙을 적용하여 검사 앞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에 관한 영상녹화 물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현행법 제 312조 제 2항을 적용하고 검사이외의 수사기관 (사법경찰관의 포함)앞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에 관한 영상녹화 물은 제 312조 제 4항이 적용되게 될 것이다. (유지영, 2008:130).

결국 영상녹화 물은 독립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 성립을 위한 경우와 탄핵증거로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석 할 수 있다.

4. 조사자증언(경찰)의 증거능력

새롭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사자 증언제도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 생각된다.

개정 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 직접 나와 조서의 내용을 증언하면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기존 판례는 피고인의 진술을 공판정에서 증언하는 자에 사법경찰관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증언하는 것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⁸⁾

그러나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증인의 범위에 명시하여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하여 사법경찰관이 포함됨을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종래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인 조사자증언제도의 도입은 조사에 임한 사법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조사경찰관의 공판정의 직접참여가 가능하여 과거에 비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완화라는 측면을 보장해주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8) 대판2005.1.25,2005도5831:대판1990.9.28,90도1483.

III.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논의 및 문제점

1.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쟁점의 대립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사항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개혁추진위가 2003년 발족되어 공판중심주의와 관련된 여러 주제 중 하나로 채택되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검찰과 법원 측의 입장이 상호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몇 가지 쟁점분야에서는 많은 논의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1) 법원 측의 입장

현행형사 소송법 개정이전인 2003년부터 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를 조직하여 '공판중심주의'라는 이념을 앞세우면서 재판절차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즉 종래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직접주의, 구술주의를 보다 실질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양형 법정심리'가 아니라 오직 수사기록과 법관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조서재판관행'을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완규, 2007:745).

따라서 지금까지 조서에 증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로 야기된 '재판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무너진 사법신뢰를 바로 잡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 수사기록에 대한 피고인의 실질적 접근보장, 조서증심의 증거방법탈피방안, 영상녹화제도, 피고인신문제도 및 공판정좌석 배치 재검토 등 대표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중에서 "조서증심의 증거 방법 탈피"를 위한 추진 방법으로 수사절차상 진술은 공판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것만 증거로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정 입법 과정에서 재검토되어 입법 수정되어 다소 완화된 법률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던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상호 다른 입장에서 논쟁의 소지가 남아있다.

2) 검찰 등 수사기관 측의 입장

법원 측의 수사절차상 진술은 증거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 측의 입장은 이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즉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빌미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적하고 재판투명화라는 이념으로서 공판중심주의는 구두변론주의, 집

중심리주의, 변론종결당일 선고원칙 등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들을 충실히 실현하는데 있는 것이지 조서를 비롯한 수사단계 진술의 현출수단을 일체 막는 것이 공판 중심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오히려 공판 심리의 충실회의 측면은 별로 논하지 않으면서 주로 조서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중점 추진내용으로 삼았다면 반박하는 등(이완규, 2005:307-312), 2005년도 사개추의 논의에서는 법원과 검찰 간 첨예한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⁹⁾

3) 증거능력에 관한 논의 과정

현행 시행되고 있는 형사 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는 처음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사개추위에 건의 검토되어 개정법의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당초 법원과 검찰 측의 주장은 주요논점에 있어 대립이 심하였다.

즉 법원 측의 입장은 피고인의 자백여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없도록 하였다. 그 뒤 검찰 측의 반발과 실무판사들의 비판적 의견에 따라 현재의 상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증거능력을 가능한 한 제한하려는 사개추위의 기본입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사단계의 진술의 증거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불안정한 상태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향후 깊은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2. 경찰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문제점

1) 경찰조서의 증거능력 배제문제

현행형사소송법의 중점추진 방향은 공판중심주의 및 조서재판 관행의 극복이라 할 수 있어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지면에 작성한 것에 불과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¹⁰⁾ 수사의 신뢰성확보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되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9) 2003. 8. 22 노무현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공동추진에 합의를 하고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2003. 10. 28) 출범하게 되었으며, 처음 설치의 동기는 대법원의 개혁에 있었으나 형사사법전반에 관한 개혁으로 발전되었다.

10) 최근 법원은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조서에 비해 경찰조사의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수사실무현장에 있어서 검찰에 비해 경찰의 입지를 많이 위축시키고 있으며¹¹⁾ 오랜 시간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증복수사 문제도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즉 '내용부인'이라는 한마디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판사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 받아서도 안 되고 증거로 사용하여 판단하여서도 안 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보다는 오히려 영상녹화 내지는 조사 경찰관의 법정증언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대비하여야 할 사항이다.

2) 조서의 진정 성립 개념의 문제

형사소송법 제 312조 2와 동법 제 312조 3에 명시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조서 증거능력에 있어 '조서성립의 진정'과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개념에 대한 해석은 조서의 증거능력인정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조서는 수사단계에서 어떠한 진술이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법의 일반이론에 의하면 조서 성립의 진정은 서명날인이나 작성절차의 진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진술의 존재에 대한 입증 수단으로서의 조서의 증거 능력 취지에 맞다.

따라서 사실 입증 수단으로서의 조서가 형식적 진정 성립을 갖추면 그 조서는 그러한 실제 진술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진술이 없었다고 의심이 되면 실제 진술의 존재를 부정하면 되는 것이다.(이완규, 2007:761).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사법경찰관 등)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진술과 조서기재 내용이 동일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술의 진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조서는 무용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영상녹화 를 등 다른 혼출 방법이 있더라도 판결 과정에서도 어떠한 진술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서의 진정성립 개념에 대한 해석은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3. 특신상태의 개념문제

11) 경찰에서 자백을 하였더라도 자백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법정에서 '내용부인'이라고 증거의견을 밝히거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이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2)고 하였으며, 피고인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작성조서 공히 특신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진술인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312조3). 여기에서 특신상태 의 의미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바, 개정과정에서 초기 법원의 입장은 특신상태 를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경우나 이에 준하여 신뢰관계자가 동석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는 비율이 극히 적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특신상태의 의미는 전문 법칙의 일반이론에 따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circumstantially)'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¹²⁾

4. 사법경찰관의 증언과 관련한 문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조사자증언제도(형사소송법 제316조)는 과거 경찰작성 조서를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검찰의 이증조사로 인한 피의자의 불편을 조사자 증언을 통하여 해소하자는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피고인의 인권보호에도 기여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매우 진일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사법경찰관은 증언을 잘 못하게 되면 위증죄의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증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고인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하였다 증언에 나서는 사법경찰관은 증언을 잘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사자 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 조화를 도모하고 수사과정에 있어서 영상녹화제도 활성화 등 수사방식이 인권 친화적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 될 거라는 게 기대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도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비판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수사기관 작성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제 312조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제 312조를 사실상 사문화한 개악이며 '피고인이 부인하면 수

12) 정황은 진술자가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자와 사건과의 관계, 진술자가 진술할 당시의 상황(예컨대 수사기관의 신문의 경우는 신문당시의 분위기), 진술자의 기억력의정도, 지적수준,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진술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의 제반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under all circumstances)판단하는 것이다. 판례에서도 특신상태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1983. 3. 8. 선고82도 3248), '부지불식간에 한 말', '사람이 죽음에 임해서한 말' 또는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한 말', '경험상 앞뒤가 맞고 이론정연한 말', '범행직후 자기의 소행에 충격을 받고 깊이 뉘우치는 상태에서한 말'등이 특히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강하다고 설명되는 경우이다.

사한 경찰관이 법원에 나와 증언해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대판 1995. 3. 24. 94도2287)와도 상반된다는 비판이다.

둘째로는 실무상 문제점으로 피고인이 자백을 하여도 '자백보강법칙'이라는 증거법상 대원칙으로 인하여 조사자의 증언은 자백의 증복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부인을 한 경우도 조사자 증언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증언을 잘 하더라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자증언의 문제는 공판중심주의를 목표로 하는 현행형사소송법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항이니 만큼 이에 임하는 사법 경찰관들의 신중한 자세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5. 증거활용상 경찰과 검찰의 차등문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판관행을 두고 조서재판이라는 비판이 행해졌던 것은 근본적으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법률상으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하는데 반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성립의 진정만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을 갖고 법원역시 불과 얼마 전까지도 형식적 진정 성립만 인정되면 실질적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실질적 진정 성립에 대한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절대적인 증거능력을 부여하였다.(김태명, 2007:833).

이후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과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진정의 성립을 인정하게 하는 등 과거의 형식적 진정 성립보다 강화하고 있다.¹³⁾

반면에 검사이외의 사법 경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 제 312조 2항과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영상 녹화물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즉 영상녹화물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보완하는 보조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한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비해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으로부터 얻어낸 진술 내용은 공판정에서 증거로 현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질 수 있어 경찰수사의 무용화의 우려가 되고 있다.(유지영, 2008:123).

13) 이는 피고인의 극히 주관적인 요건에 의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좌우되는 불합리를 타파하고 대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근거능력을 합리적으로 부여하도록 보완한 것이다

6. 수사권 약화의 문제

현행형사소송법이 추구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시대의 흐름에는 맞는 사항이라 할 수 있지만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함으로 인해 적법한 수사가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우려되고 있다.

즉 적법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체진실의 발견과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그동안 지나치게 실체진실주의로 기울어졌던 수사방향은 불법과 잉수사와 조서 재판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였던 게 사실이나, 갈수록 지능화되고 흥포화 되고 있는 범죄현장에서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의 신문을 거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은 엄청난 낭비이며 이와 같이 수사권이 약화될 경우 '경찰과 검찰의 수사역량이 떨어질 것은 불 보듯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향후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와 맞물려 깊은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¹⁴⁾

IV. 경찰작성조서의 증거능력 향상을 위한 보완 방안

1. 피의자신문 진술과 조서 개념의 분리 이해

14) 최근 용산참사와 관련(2010. 2)하여 유발된 검경간 갈등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논란이 재점화된 바 있다. 이는 2008년 개정시행 된 형사 소송법에 의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란 취지로 공판중심주의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수사권 약화로 여긴 검찰은 높아진 영장기각률에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대검찰청과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수가 공판중심주의 도입 이전 8만~10만여 명에서 도입된 이후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이런 까닭에 검찰은 여전히 공판중심주의가 검찰의 증거능력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근(2010. 2) 검찰은 총장 산하에 형사정책단을 꾸려 허위 진술시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진술여부에 따라 형량을 조정해 주는 '플리바케닝'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면서 검찰은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내는 '증거기록 분리 제출'을 공언했으며, 이렇게 증거기록과 수사기록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한 것이 이번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문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재판 과정을 투명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판중심주의의 취지가 오히려 조서의 증거능력 폐지와 연결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 법원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영장 향고 제, 사법협조자 처벌 감면 제, 중요 참고인 구인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나라의 무죄 율이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는데 우리는 1%도 안 되는 현실이 공판중심주의를 불러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의 안착을 위해서는 오히려 증거 제시가 우선 실행되고, 피고인 열람을 보장하는 등 공판 중심 준비 절차가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조서라는 것은 단지 진술의 존재자체를 지면위에 사실대로 작성해 놓은 진술의 존재를 입증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공소 사실의 인정 근거가 되는 것은 진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조서와 진술을 분리하여 사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증거법의 일반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서는 원래 어떠한 진술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 어떠한 진술이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조서를 근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술의 존재에 대한 입증수단으로서의 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는 것이 된다. 다만 조서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입증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게 된다. (이완규, 2007:759).

특히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 능력인정 범위가 열등한 경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영상녹화나 조사자증언제도가 보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힘들게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피고인의 부인 진술 한번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게 된다면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더구나 현행 형사 소송법이 조사자 증언, 영상 녹화 를 등을 진술의 현출 방법으로 도입하고는 있으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출되지 않게 되면 실무적인측면에서도 어떠한 진술이 있었는지를 찾아내지 못하는 등 적정한 판결에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진실을 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경찰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여야 한다.

2. 피의자신문조서 형태 개선 검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실관계 규명과 자기변호의 기회제공이 목적이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매체가 종이위에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판정에서 신문과정을 현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형사 소송법에서는 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제 244조의2)제도와 함께 조사자 증언제도(제 316조)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의 증언의 증거능력을 보완하고 있다.

이중 영상녹화 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 녹화 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 2항)고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을 새로운 매체인 영상녹화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¹⁵⁾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문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불안전한 종이

15) 개정형사소송법의 취지는 조서재판주의를 지양하고 직접심리주의와 구두변론 주의를 통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의 두 가지 기능이 영상녹화에

형태이기 때문에 신문조서보다는 진술내용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현출할 수 있는 영상녹화 물 형태의 기록에 보다 우월적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종이로 된 조서의 작성방법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 신문조서의 형태개선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경찰과 검찰 간 증거능력 차등해소

현행 형사소송법(제312조)은 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 종래에 비해 많이 제한하였다 하지만 검찰의 경우에는 조서와 영상녹화를 병행하게 되면 검사작성피의자 신문조서를 유효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등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비해 여전히 우월적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경우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영상녹화 하더라도 단지 기억 환기를 위한 증거로서만 활용 할 수 있어 오로지 조사자의 법정증언의 방법만이 유용하게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차등을 주고 있는 것은 증거 능력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간 증거능력부여를 균형화 할 필요가 있다.

4.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판단강화

현행형사소송법에서 영상녹화 물을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한 방법으로 도입한 배경은 조서의 진정성을 보완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불법수사를 방지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로 이끌려는 현행법의 취지에 맞는 개선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 물 역시 조서와 마찬가지로 진술의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비록 영상녹화 물에 나타나는 진술로서 피신문자의 태도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진상을 입증한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영상녹화물이 현출 된 장면이라 하더라도 자세하게 전체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영상물이 보여주는 시청각 효과에 의해서만 배심원과 판사에게 과도한 심증을 형성케 할 수 있는 우려도 고려가 되어야할 문제이다.(유지영,2008:130). 따라서 영상녹화 물에 증거능력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상의 소송구조하에서는 너무일방적이고 무리한적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영상녹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증거능력 판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물증중심의 과학수사 체계 확립

충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매체인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또 그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비판이 되고 있다.

종래의 조서재판증심주의를 위한 자백위주 수사관행에서 물증 중심의 과학수사체계를 확립하는 게 공판증심주의에서는 가장 요청되는 사항이다.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이를 법정에서 현출하여 배심원과 판사로부터 유죄의 심증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수사관은 범죄현장에서 과학적지식과 기술감식시설·장비·자재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수사능력과 수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이만종, 2007:298).

이는 육감수사 등 체험적인 육감이나 추리에 의존하는 과거의 수사방식으로는 더 이상 증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수집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될 수 있도록 수사관의 전문성 확보와 수사 매뉴얼 작성 등 표준화된 수사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관의 법정증언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제316조),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한 영상물을 제작(제244조의2)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의 조서작성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더구나 조서의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조서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증인으로서의 증언에 철저히 대비하고 영상녹화를 제작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물론 아직 현행형사법 역시 제 244조의 3 제2항과 제 244조의 제1항등에 조서작성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판증심주의 하에서의 진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서작성에만 치중하는 수사관행은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결국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피의자 인권보장이라는 입장에서 제한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서를 중심으로 하는 재판보다는 수사기관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공판증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V. 결 론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형사소송법의 개정 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해 증거능력 인정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된 현행형사소송법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향상을 위해 조사자 증언제도와 영상녹화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경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보완하고 있어 수사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실무상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기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즉 조서증거능력의 보완 방법으로 도입한 제 316조(전문제도) '조사자 증언제도'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판정에서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도입의 근본취지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조사자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자백 보강법칙'과 충돌할 수 있어 이 제도가 법관의 심증 형성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지언정 결정적으로 독립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도입의 실익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지적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운용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경우 과거에 비해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인해 직접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법정증언이 가능해지는 등 많은 발전적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보다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영상녹화물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보완하는 보조증거 인정 부분에 있어서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보다 열등한 위치에 두는 등 차별을 두고 있어 사법경찰관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항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검찰에게 부여된 과도한 수사권을 조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를 위해 보다 적합한 수사구조를 재확립하여야 한다는 오FOT동안의 검·경간 수사권 조정 논의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연륜이 없는 젊은 판사와 검사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수사와 재판을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로 연륜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로 판·검사를 충원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¹⁶⁾ 이에 비추어 볼 때 수사절차상 실무현장에서 경륜이 많은 사법경찰관보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더 우월한 위치에 두고 있는 현행 법 제도 역시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찰 스스로도 공판중심주의에 적합한 수사 역량 함양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법론 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니 만큼 수사의 기본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양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해석 및 운영이 필요하다.

16) 대법원은 2010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분리선발, 법관직급제 개편, 평생 법관제 도입, 법조일원화 등 법관 인사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대검찰청도 검찰 개혁과제를 비롯해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각종 현안을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형사정책단'을 검찰총장직속 기구로 신설하여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동안 경력 법조인으로서 법관에 임용된 인원은 2006년과 2007년 각 17명, 2008년 21명, 2009년 27명, 2010년 28명으로 점차 들어나는 추세로 필답시험 성격에 의존해 20~30대 어린 나이의 사법 연수원생을 수료와 동시에 법관으로 임용하는 기존 방식의 단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회,(200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의 도입, 「국회법제 사법위원회 공청회자료」.
- 김민영,(2005), 시민참여재판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발표자료」.
- 김영기,(2005), 일본의 재판원 제도에 관한 소고, 「검찰」 제 116호.
- 김태명,(2004), 재정신청 제도의 의의와 범위의 확대, 「형사법연구」 제 21호.
- 김태명,(2007), 개정형사소송법과 국민 참여제도의 시행에 따른 경찰 수사의 변화 방향, 「형사정책 연구」 제 18권 제 3호.
-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2008), 「신 형사소송법」, 흥문사.
- 법원행정처,(2007),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해설」.
-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2006) 「형사소송법개정안 설명자료」.
- 성낙현,(2006),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만의 증거 개시제도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 연구」 제8권 1호.
- 임명용,(2004),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수집 효율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성낙현,(2006)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 수집 효율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동희,(2003), 피의자신문의 현황과 개선책, 「형사법 연구」 제 20호.
- 이용규,(2005), 형사소송의 세계화를 위한 공판 중심주의의 합리적 실현 방안, 「저스티스」 제 92호.
- 이승호,(2007), 개정형사소송법상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형사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 이만종,(2007), 「경찰수사총론」, 청목출판사.
- 이재상,(2006),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 방안, 박영사.
- 이완규,(2007), 개정형사소송법상 조서의 증거능력 규정논의 경과, 「형사정책 연구」 제 18 권 제 3호.
- 이완규,(2005),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오해와 개선되어야할 공판운영관행,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VD)」.
- 이천현,(2007), 국민의 사법 참여와 형사재판 개선방안, 「한국공안 행정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 유지영,(2008), 형사소송법 제 312조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중앙법학」 제 10집 제 4 호.
- 정웅석,(2005),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저스티스」 제 83호.
- 차동언,(2006),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안의 공판절차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 연구」 제 8권 1호.
- 차용석,(2005),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의 형소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조」 동권 586호.

황운하.(2007). 국민의 사법참여와 경찰수사의 환경변화,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2.외국문헌

Joel Samaha,(2005), Criminal Procedure, Thomson Wadsworth.

John Sprack,(2004), A practical Approach to Criminal procedure, oxford University press.

Mirelle G. Delmas-Marty,(2002), European criminal proced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il Vidmar,(2000),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on the common Law" World Jury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투고일자 : 2010. 2.17

개제확정 : 2010. 3.12